

=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=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12. 11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12. 12

다. 상 정 일 자 :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('07.12.20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양종호 기획감사실장)

가. 제안이유

본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인용조명을 정비하고, 집행기관과 구의회 사무국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명 정비 (안 제1조)
 - 지방자치법 제102조 → 제112조
- 집행기관과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조정 (안 제2조)
 -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 : 714명 → 713명 (감1명)
 -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조정 : 15명 → 16명 (증1명)

3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(제11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 조례 개정안은

2007. 5. 11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관련조항의
인용조명을 정비하고,

○ 집행기관의 정원을 714명에서 713명으로 1명 줄이는 대신

구의회 사무국의 정원을 15명에서 16명으로 1명 증원하려는 것으로
검토결과 원안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 론 요 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